붙임 1 우편상식 수정 사항

□ 14페이지

○ 다. 사제하는 우편엽서

기존	수정
※ 50g까지 규격외 엽서는 430원(규격 봉투 25g초과 50g까지) 요금을 적용	※ 50g까지 규격외 엽서는 **450원**(규격 봉투 25g초과 50g까지) 요금을 적용

□ 21페이지

○ 나. 3) 다수지 발송계약

기존	수정
계약자(계약업체)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택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~	계약자(계약업체)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**우체국소포** 이용계약을 체결하고~

□ 32~33페이지

○ 4. 선납 라벨 서비스

기존	수정
나. (5) 준등기우편물로 취급 시점 - 창구접수: 우체국 창구 접수 시 - 우체통 투함: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	나. (5) 준등기우편물로 취급 시점 - 창구접수: 우체국 창구 접수 시 - 우체통 투함: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- **무인우편접수기 이용: 무인우편접수기 접수 완료 시**
다. 3) 접수채널: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	다. 3) 접수채널: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, **무인우체국우편접수기**
라. 2)~3) 유효기간	라. 2)~3) **사용권장기간**

□ 98페이지

○ 제2절 손실보상제도

기존	수정
1.다. 운송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	1.다. 운송원**이**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

□ 113페이지

○ 라.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

기존	수정
2) 2순위: 익일특급우편물, 등기소포 우편물(택배포함), 등기통상우편물, 국제항공우편물	2) 2순위: 익일특급우편물, 등기소포 우편물**(방문소포 포함), 일반등기·선택 등기우편물 및 준등기우편물,** 국제항공우편물

□ 116~117페이지

○ 다. 배달의 우선순위

기존	수정
2) 제2순위: 일반통상우편물(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)	2) 제2순위: **준등기우편물**, 일반통상우편물(국제선편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)

□ 153페이지

○ 다. 통관검사대상우편물의 처리

기존	수정
2) 통관대상우편물을 접수 ~ 고무인을 날인	**삭 제**

□ 158페이지

○ 3) 기타

기존	수정
가) 요금납부방법: 현금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, 우표	가) 요금납부방법: 현금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, 우표, **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(전자결제)**

□ 178페이지

○ 사. 별납신청서 처리

기존	수정
2) 전산으로 출력되는 ~ 부산국제우체국(선편)으로 발송	**2) 발송신청서는 접수담당부서에서 보관, 접수증은 발송인에게 교부, 접수통지서는 우편물 발송부서에 보관하고, 송부서는 우편물과 함께 국제우편물류센터(항공) 또는 부산국제우체국(선편)으로 발송**

붙임 2 금융상식 수정 사항

【 예금상식 】

□ 공통사항(용어 변경)

기존	수정
"공인인증서"	**"공동인증서" (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)**

□ 2페이지

기존	수정
【그림 1-1】 노동, 토지 자본(기업에서 가계로 화살표) / 임금, 지대, 이자(가계에서 기업으로 화살표)	【그림 1-1】 노동, 토지 자본(가계에서 기업으로 화살표) / 임금, 지대, 이자(기업에서 가계로 화살표)

□ 169페이지

○ 2. 우편환·대체

기존	수정
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 계좌를 통하여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·공과금·할부금 등 수납, 각종 연금·급여 지급, 공과금 자동 이체 및 수표 발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.	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 계좌를 통하여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·공과금·**~~할부금 등~~** 수납, **~~각종 연금·급여 지급, 공과금 자동 이체 및 수표 발행~~**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.

□ 202~203페이지

○ 3-5-2. 고객확인 대상

기존	수정
○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 원(미화 1만 불)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,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② 2천만 원(미화 1만 불 상당액)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	○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**1천만 원**(미화 1만 불)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,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② **1천만 원**(미화 1만 불 상당액)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